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신규조문대비표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유
1	[일러두기] ○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따름 ○ 이번 제9-1판은 '23. 6. 1.부터 적용되는 위기단계 조정(1단계) 및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일러두기] ○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따름 ○ 이번 제10판은 '23. 8. 31.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해당 지침 적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 및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지침 개정 사유 명시 ○ 지침(제10판) 적용기준 시점명시 (23.8.31. 검체채취자부터)
1. 개요			
1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3판)」 사례 정의에 따름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한시 시행, '22.3.14~별도 안내 시)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 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치료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대상 세부기준 ○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II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포함('22.3.14~별도 안내 시까지, 2023.8.31.부터 소급 적용) ○ (중환자실 격리실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됨..경우 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있나치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 (중증치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III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개정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 유
2	<p>-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 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하고, 입원 치료비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부록1)” 지원 계속</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다만, 7월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적용 ▶ 근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2.6.24.)</p> </div>	<p><삭제></p>	<p>○ 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재택치료비 지원 안내 내용 삭제</p>
2	<p>- 다만,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원외처방전 관련 비용포함)를 본 경우에는 계속 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p> </div>	<p><삭제></p>	<p>○ 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재택치료비 지원 안내 내용 삭제</p>
3	<p>○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 지원</p>	<p>○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다만, 중증면역저자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p>	<p>○ 치료비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개정</p>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 유
3	<p>○ (지원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p>	<p>○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코로나19 관련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지원범위 상세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증처치와 관련 있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격리병실료)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지정격리병상」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지원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div>	<p>○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개정</p>
3	<p>- (인정 치료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주요 내용 (상세사항은 부록1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OH011) 등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주사제(렘데시비르)의 약값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자의 경우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div>	<p><삭제></p>	<p>○ (투석)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수가 종료되고, 코로나19 혈액투석 행위 수가의 본인부담금 산정 종료에 따른 지원사항 없음</p> <p>○ (먹는 치료제 부대비용) 먹는 치료제 부대비용 미지원됨에 따라 내용 삭제</p>
3	<p>- (응급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p>	<p><삭제></p>	<p>○ 지원범위 변경에 따라 응급실 진료비 미지원으로 내용 삭제</p>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유
II.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4	<p>1. 감염병 신고</p> <p>▶ 확진환자 신고에 관한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참조</p>	<p><삭제></p>	<p>○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에 따라 감염병 신고 내용 삭제</p>
4	<p>○ (청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p> <p>* 환자부담금: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③팔수비용어항목 등</p> <p>▶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진단명, △검체채취일, △격리실 입원기간, △위중증 및 중증면역저자에게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외국인 치료비)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 (환자가 납부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p>○ (청구) 의료기관은~ <최동></p> <p>▶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상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진단명,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위중증 및 중증면역저자에게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외국인 치료비)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 (환자가 납부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의 기준 명시 ○ (의사소견서) 감염병신고서 미작성에 따라 의사소견서 필수 제출해야 하기에, 의사소견서 상 내용 명시 ○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응급실 비용지원 중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유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비용신청서</td> <td>○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td> </tr> <tr> <td rowspan="2">공통서류</td> <td>○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td> </tr> <tr> <td>○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 가능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td> </tr> <tr> <td></td> <td>○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할 수 있음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td> </tr> </table>	비용신청서	○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 가능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 할 수 있음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제출서류</th> </tr> <tr> <td style="width: 20%;">비용 신청서</td> <td>○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td> </tr> <tr> <td rowspan="2">공통서류</td> <td>○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td> </tr> <tr> <td>○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td> </tr> <tr> <td></td> <td>○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전담치료병상(치정전염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현시점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td> </tr> <tr> <td>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td> <td>○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원에서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td> </tr> <tr> <td></td> <td>○ 통장(계좌) 사본 1부</td> </tr> <tr> <td></td> <td>○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td> </tr> <tr> <td></td> <td>○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td> </tr> <tr> <td>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td> <td>○ 사업자등록증 1부</td> </tr> <tr> <td></td> <td>○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td> </tr> </table>	제출서류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전담치료병상(치정전염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현시점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원에서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		○ 통장(계좌) 사본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에 따라 감염병 신고서 미작성에 따른 제출서류 세부내용 변경
비용신청서	○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 가능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 할 수 있음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제출서류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전담치료병상(치정전염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현시점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원에서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																														
	○ 통장(계좌) 사본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3	<p>2. (약국)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제출 서류</th> </tr> <tr> <td style="width: 20%;">비용 신청서</td> <td>○ (의원·병원)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1부[서식2]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1부</td> </tr> <tr> <td rowspan="2">공통서류</td> <td>○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td> </tr> <tr> <td>○ 필수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td> </tr> <tr> <td>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td> <td>○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td> </tr> <tr> <td>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td> <td>○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통장(계좌) 사본 1부 ○ (보호자가 신청 시) 지원 대상자와 본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td> </tr> </table>	제출 서류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1부[서식2]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1부	공통서류	○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필수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통장(계좌) 사본 1부 ○ (보호자가 신청 시) 지원 대상자와 본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비 지원대상·범위 변경에 따른 약제비 청구 서류 관련 내용 삭제 																	
제출 서류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1부[서식2]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1부																														
공통서류	○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필수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통장(계좌) 사본 1부 ○ (보호자가 신청 시) 지원 대상자와 본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유
---	------------	-----------	--------

IV. 서식

4	<p style="text-align: center;">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접수 기관소명</th> <th style="width: 50%;">접수일자</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td> <td>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입원·격리(대상자)의 관계(의료기관은 직할 생략)</td> </tr> <tr> <td>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신고일자 주소</td> <td>생년월일 국적</td> </tr> <tr> <td>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td> <td></td> </tr> <tr> <td>진료비 청구금액(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r> <tr> <td colspan="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제출 서류 2</td> </tr> <tr> <td>비용 신청서</td> <td>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td> </tr> <tr> <td rowspan="4">공통서류</td> <td>○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신청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td> </tr> <tr> <td>○ 의료가권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td> </tr> <tr> <td>○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취일, △증상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초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td> </tr> <tr> <td>○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염력이 최초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전염/역사 등 제출</td> </tr> <tr> <td>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td> <td>○ 통장(계좌) 사본 1부</td> </tr> <tr> <td>신청 시 제출서류</td> <td>○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td> </tr> <tr> <td>의료기관에서</td> <td>○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td> </tr> <tr> <td>신청 시 제출서류</td> <td>○ 사업자등록증 1부</td> </tr> <tr> <td></td> <td>○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td> </tr> <tr> <td colspan="2">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직접방법</td> </tr> <tr> <td colspan="2">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td> </tr> </tbody> </table>	접수 기관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입원·격리(대상자)의 관계(의료기관은 직할 생략)	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신고일자 주소	생년월일 국적	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청구금액(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2		비용 신청서	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신청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가권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취일, △증상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초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염력이 최초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전염/역사 등 제출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접방법		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접수 기관소명</th> <th style="width: 50%;">접수일자</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td> <td>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입원·격리(대상자)의 관계(의료기관은 직할 생략)</td> </tr> <tr> <td>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신고일자 주소</td> <td>생년월일 국적</td> </tr> <tr> <td>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td> <td></td> </tr> <tr> <td>진료비 청구금액(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r> <tr> <td colspan="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제출 서류 2</td> </tr> <tr> <td>비용 신청서</td> <td>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td> </tr> <tr> <td rowspan="4">공통서류</td> <td>○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신청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td> </tr> <tr> <td>○ 의료가권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td> </tr> <tr> <td>○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취일, △증상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초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td> </tr> <tr> <td>○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염력이 최초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전염/역사 등 제출</td> </tr> <tr> <td>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td> <td>○ 통장(계좌) 사본 1부</td> </tr> <tr> <td>신청 시 제출서류</td> <td>○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td> </tr> <tr> <td>의료기관에서</td> <td>○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td> </tr> <tr> <td>신청 시 제출서류</td> <td>○ 사업자등록증 1부</td> </tr> <tr> <td></td> <td>○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td> </tr> <tr> <td colspan="2">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직접방법</td> </tr> <tr> <td colspan="2">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td> </tr> </tbody> </table>	접수 기관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입원·격리(대상자)의 관계(의료기관은 직할 생략)	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신고일자 주소	생년월일 국적	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청구금액(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2		비용 신청서	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신청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가권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취일, △증상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초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염력이 최초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전염/역사 등 제출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접방법		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p>○ 치료비 지원대상·범위 변경에 따른 제출 공통서류 변경</p>
접수 기관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입원·격리(대상자)의 관계(의료기관은 직할 생략)																																																																																				
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신고일자 주소	생년월일 국적																																																																																				
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청구금액(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2																																																																																					
비용 신청서	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신청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가권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취일, △증상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초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염력이 최초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전염/역사 등 제출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접방법																																																																																					
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접수 기관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입원·격리(대상자)의 관계(의료기관은 직할 생략)																																																																																				
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신고일자 주소	생년월일 국적																																																																																				
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청구금액(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2																																																																																					
비용 신청서	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신청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가권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취일, △증상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초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염력이 최초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전염/역사 등 제출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접방법																																																																																					
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서식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삭제>	<p>○ 치료비 지원대상·범위 변경에 따른 약제비 청구 서식 삭제</p>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 유
V. 부록			
1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div>	<p style="color: blue;"><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에 따라 수가 종료, 본인부담금 미부과, 지원범위 축소 등에 따른 지원 중단
16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부록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font-size: small;">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격리 치료비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격리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부록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div> <p style="color: blue;"><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에 따라 중증환자에 한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하기에 해당 내용 삭제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유																							
16	<p>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p>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p> <p>▶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3판)」 사례 정의에 따름</p> <p>○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한시 시행, '22.3.14-별도 안내 시)</p> <p>○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p>	<p>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p>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치료를 받은 확진환자</p> <p>※ '23. 8. 31. 검체채취일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p> <p>①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II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p> <p>② (10일 이내 내원)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중상악화료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치료를 받는 경우도 지원</p> <p>* (예시) (9.1.) 확진 → (9.10.) 내원(일반 병실 등 입원) → (9.11.)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 (9.12.) 중증치료 시작</p> <p>③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리리료'*가 산정된 경우 또는 중증환자 진단치료병상(중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타병상(중정격리병상 중 중증환자 대상 병상 제외)에 입원한 경우</p> <p>* 추가코드: AJ010, AJ011, AJ020, AJ021</p> <p>④ (중증치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III 확진환자 관리 1. 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p> <p>※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p> <p>(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p>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II. 확진환자 관리 1. 확진환자 관리</p> <table border="1" data-bbox="1003 694 1630 986"> <thead> <tr> <th>단계</th> <th>정의</th> <th>중증도 분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말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td> <td rowspan="2">경증 이하</td> </tr> <tr> <td>2</td> <td>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td> </tr> <tr> <td>3</td> <td>비관상소지용(O2 with nasal prong)</td> <td rowspan="2">중등증</td> </tr> <tr> <td>4</td> <td>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td> </tr> <tr> <td>5</td> <td>비침습인공호흡기 / 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 / high flow O2)</td> <td rowspan="3">위중증</td> </tr> <tr> <td>6</td> <td>침습인공호흡기 (invasive ventilation)</td> </tr> <tr> <td>7</td> <td>다기관손상 / ECMO / CBRT (multi-organ failure/체외막산소공급/지속적신대체요법)</td> </tr> <tr> <td>8</td> <td>사망(death)</td> <td>사망</td> </tr> </tbody> </table>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말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상소지용(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 / 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 / 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 (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 / ECMO / CBRT (multi-organ failure/체외막산소공급/지속적신대체요법)	8	사망(death)	사망	<p>○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대상 변경</p>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말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말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상소지용(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 / 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 / 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 (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 / ECMO / CBRT (multi-organ failure/체외막산소공급/지속적신대체요법)																									
8	사망(death)	사망																								
17	<p>Q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기간?</p> <p>○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 지원</p> <p>▶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p>※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p> <p>* 격리해제되는 퇴원일(통상적 8일차)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p>	<p>Q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기간?</p> <p>○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p> <p>* 중증환자 진단치료병상(중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타병상</p> <p>※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p> <p>-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하고,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내원한 경우도 지원</p> <p>* (예시) (9.1.) 확진 → (9.13.) 내원 → (9.14.)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 (9.15.) 중증치료 시작</p> <p>**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20일 초과)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p> <p>◆ 지원기간</p>  <p>The diagram shows a horizontal timeline with several points: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Admission to ICU isolation room), '중환자실 격리실 퇴원' (Discharge from ICU isolation room), and '중환자실 격리실 퇴원' (Discharge from ICU isolation room). A green bar labeled '지원기간' (Support period) spans from the first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to the second '중환자실 격리실 퇴원'. Other points on the timeline include '중환자실 격리실 퇴원' (Discharge from ICU isolation room) and '중환자실 격리실 퇴원' (Discharge from ICU isolation room).</p>	<p>○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기간 변경</p>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 유
17	<p>Q4.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 * (필수비급여) 서식3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응급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물인 경우 미지원 ○ (퇴원약)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퇴원약 항목*은 입원 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로 지원 대상이 아님 * 퇴원약제비, 퇴원약 조제료, 외래의약품 관리료 등 - 퇴원 시에 격리권고 기간(5일)*이 남은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가능하고, 초과한 경우 미지원 *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권고일이 7일이지만, 퇴원하여 격리권고일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p>Q4.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지원범위 상세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증처치와 관련 있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격리병실료)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함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만 지원하며 식비, 의료질평가지원료 등 미지원 *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료 중 중환자실 마스크 비용(승가코드: AJ031) 포함하여 지원 - (지정격리병상 병실료)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닌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10 격리실 입원료'만 지원하며, 식비, 의료질평가지원료 등 미지원 *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마스크 비싼(승가코드: AK034, AK035) 포함하여 지원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닌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의사조견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 - (퇴원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퇴원약 및 관련 부대비용* 미지원 * 퇴원약제비, 퇴원약조제료, 외래의약품관리료 - (확진환자 투석)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OH0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 - (코로나19 PCR) 코로나19 PCR 검사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
18	<p>Q5.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관하여는 미지원 - 입원·격리 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지원) 	<p>Q5.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기저질환 관련 지원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 유
19	<p>Q6.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 지원 여부는?</p> <p>○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임에도 진찰료, 약제비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p>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p>	<p><삭제></p>	<p>○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p>
19	<p>Q7.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외래진료 시 환자와 의료기관의 확인사항은?</p> <p>○ (환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요양시설 격리 중임을 알 수 있는 격리 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지참</p> <p>○ (의료기관) 요양시설 격리 확진환자 진료 시 격리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DUR 등을 통해 ①격리기간, ②요양시설 격리자, ③건강보험 가입유무 등을 확인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심평원 또는 보건소에 청구</p>	<p><삭제></p>	<p>○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p>
19	<p>Q8. 자율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p> <p>○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율격리 중인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또는 인공산장실 내 코호트 격리 투석실 이용 시, 격리실 입원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OH011) 등 지원 하지만, 투석 비용, 투석 약제값은 미지원</p> <p>※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참조</p> <p>- 외래환자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 지원</p>	<p>Q6.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p> <p>○ (확진환자 투석)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OH011)는 관련 수가 종료 및 본인부담률 변경되어 투석관련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p> <p>-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가 변경에 따라 8.31. 진료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항 없음</p> <p>* 건제체결일이 '23.8.31. 이전인 확진환자의 혈액투석의 격리 및 행위 수기도 '23.8.30. 진료분까지만 지원</p>	<p>○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p>
19	<p>Q9.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여부는?</p> <p>○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약국)에서 처방 시 약값과 부대비용(조제료 등)까지 지원</p> <p>*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보협급여과-794호, '22.2.10.) 참고</p>	<p>Q7. 중증치치 중인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 여부는?</p> <p>○ 치료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중증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약국)에서 처방하는 경우 부대비용(조제료 등) 지원</p> <p>-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중증치치 받지 않은 환자는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미지원</p>	<p>○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p>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 유
19	<p>Q10.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내원 후 응급실에서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질환 관련한 검사 및 진료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응급실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선별검사로 확진된 경우 검사비 포함하여 지원 - (청구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p>Q8.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기에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
20	<p>Q11.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지원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관하여는 환자 부담 ○ 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미지원 	<p>Q9.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중증치료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
	<p>Q12.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코호트 격리) 지원 여부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호트 격리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 격리실(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p>Q10.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코호트 격리) 지원 여부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코호트격리 관련 비용 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 유
	<p>Q13.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p> <p>○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7호(2021.8.11.) 참조 <p>○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p style="text-align: center;">< 호흡기 검사료 지원 불가 사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p>○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중증면역저하자와 치료비 청구(20일 초과)를 위해 의사소견서 등 제출하는 경우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p>○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p> <p>○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p>○ (식대) 보호자 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p>	<p>Q11.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p> <p>○ 코로나19 관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 필수비급여 항목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청·지자체에서 치료비 심사 시에 코로나19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p>○ (의사소견서) 치료비 청구를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하여 제출 시 해당 비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인 ‘의사소견서’를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법정감염병신고서’로 간음할 수 없어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치료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p>○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p> <p>○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p>○ 위기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치료비 지원범위 변경</p>

쪽	현 행(제9-1판)	개 정(제10판)	개 정 사 유
21	<p>Q15.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 징후기록지 등)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p>Q13.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인 '의사소견서'를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법정감염병신고서'로 갈음할 수 없어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치료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일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급 하향 및 위기단계 조정으로 법정감염병신고서 미작성에 따라 치료비 청구서류 변경
22	<p>Q19. 입원·격리 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입원·격리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급 하향 및 위기단계 조정되어 타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안내 삭제